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36,900,000	22,107,000
일반회계	633,000,000	18,990,000
특별회계	103,900,000	3,117,000
공기업특별회계	36,600,000	1,098,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000,000	510,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600,000	588,000
기타특별회계	67,300,000	2,019,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296,000	98,88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312,000	69,3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660,000	19,8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220,000	66,600
주택사업특별회계	820,000	24,6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200,000	6,0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90,000	20,700
치수사업특별회계	3,560,000	106,8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100,000	153,000
대지보상특별회계	364,000	10,92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5,000	1,0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5,460,000	1,063,8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2,583,000	377,4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325,03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3,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